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19년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	일시차입 한도액
	예산액	기정액	금 회 추경액	
총 계	453,538,480	432,892,941	20,645,539	13,606,154
일반회계	439,626,090	419,143,045	20,483,045	13,188,783
특별회계	13,912,390	13,749,896	162,494	417,371
의료급여기금	509,324	476,329	32,995	15,280
지하수 관리	905,220	905,220	0	27,156
주차장	12,497,846	12,368,347	129,499	374,935

제2조 2019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 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4조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“계속비 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.

- 일반회계 : 24,617,775천원
- 특별회계 : 9,035,302천원
  - 의료급여기금 2,997천원
  - 지하수관리 853,551천원
  - 주차장 8,178,754천원

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 부담금 포함), 특별교부세, 특별교부금, 기부금 등은 예산 승인 된 것(명시이월 포함)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